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시행지침

2019. 12. 31.

고령사회인력정책과

< 목 차 >

I. 제도개요	
1. 제도 의의	1
2. 관련 법령	1
3. 용어 정의	2
4. 지원대상 및 제외대상	2
II. 지원 요건 등	4
III. 지원 수준 및 한도	
1. 지원수준 및 한도	9
2. 지원기간	11
IV. 지원 신청 등	17
V. 지도 점검 및 위반에 대한 조치	23
VI. 관련 고시	24
* 신청서 양식 등	29
VII. Q & A	33

1. 제도 의의

- 주된 일자리에서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 정년을 시행 중인 사업주가 정년을 연장·폐지하거나 정년은 변경하지 않고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하여 고용하는 경우 비용의 일부를 지원

2. 관련 법령

【고용보험법】

제23조(고령자등 고용촉진의 지원) 노동부장관은 고령자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이하 “고령자등”이라 한다)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자 등을 새로 고용하거나 이들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고용안정 조치에 해당된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4(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사업주가 정년을 연장 또는 폐지하거나 정년의 변경 없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하여 고용하거나 재고용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요건, 수준 및 기간과 지원금의 신청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정년)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

제21조(정년퇴직자의 재고용) ① 사업주는 정년에 도달한 자가 그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할 때 그 직무수행 능력에 맞는 직종에 재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

3. 용어 정의

① 계속고용제도

- 기존의 정년을 연장 또는 폐지하거나, 정년의 변경 없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하여 고용하거나 재고용하는 것을 말함

② 계속고용제도의 시행일

- 노사합의 등을 통해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기로 합의하여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명시적으로 정한 계속고용제도의 시행이 개시되는 날을 말함

* 예시: '19.7.1.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19.12.1.부터 기존 정년을 1년 연장하여 적용하기로 한 경우 '19.12.1.이 계속고용제도의 시행일이 됨

③ 장려금 산정 기준일

- 계속고용제도의 시행일 이후 정년에 도달하여 고용연장조치에 의해 계속 고용된 최초의 근로자의 정년 도달일의 다음 날

* 예시: '19.7.1.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19.12.1.부터 기존 정년을 1년 연장하기로 한 경우, 이후 정년에 도달하여 고용연장 된 최초의 근로자의 정년 도달일이 '20.2.1.이라면 다음 날인 '20.2.2.이 장려금 산정 기준일이 됨

< 계속고용제도의 시행일, 장려금 산정 기준일 예시 >

단체협약 체결일 ↘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	장려금 산정 기준일 ↘ 첫 번째 고용연장된 근로자의 정년도달일 ↘	
'19.7.1	'19.12.1	'20.2.1	2.2

4. 지원대상 및 제외 대상

① 지원대상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은
 - 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 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 사업주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대상기업과

- ②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임

* 중견기업은 한국중견기업연합회(www.ahpek.or.kr)에서 발급한 「중견기업 확인서」로 확인

② 지원이 제외되는 사업

○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이라 하더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됨

-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기관), 지방공기업(「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지정된 기관)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제2조제1호 가목에서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을 국가, 지방자치단체로 봄

【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 기관 】

△ 「정부조직법」에 따른 각급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및 지방의회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감, 교육청 및 교육위원회

△ 「국회법」에 따른 국회, 「법원조직법」에 따른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은 알리오 시스템(www.alio.go.kr)에서 확인

*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지정된 공기업은 클린아이 시스템(www.cleaneye.go.kr) 확인

- ② 부동산업, 일반유흥업, 베테업 등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주

* 부동산업, 일반유흥·무도유흥·기타주점업, 갬블링 및 베테업 등

- ③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 확인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 ④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른 보험료 등을 체납한 사업주

II

지원 요건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①, ②, ③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주에게 지급됨

① 계속고용제도의 시행일 직전 1년 이상 계속하여 정년을 운영하고 있을 것

① '계속고용제도의 시행일 직전 1년 이상'이므로

- 취업규칙 등에 정해진 계속고용제도의 시행일의 전일부터 역산하여 1년 이상 정년을 운영하고 있어야 함

* 예시 : '19.7.1. 취업규칙을 변경하여 계속고용제도의 시행일을 '19.8.1.로 정하였다면, '19.8.1.의 전 날인 '19.7.31.로 역산하여 1년이 되는 '18.8.1.까지는 정년을 운영하고 있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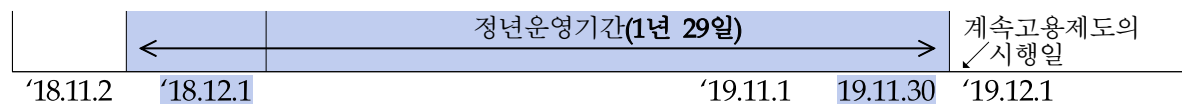
② 직전 1년 이상 '계속하여' 정년을 운영하고 있어야 하므로

- 계속고용제도의 시행일의 전일부터 역산하여 1년 이상 단절 없이 정년을 운영하여야 함
- 따라서 계속고용제도의 시행일 직전에 간헐적으로 정년을 운영하여 운영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여도 지원대상이 아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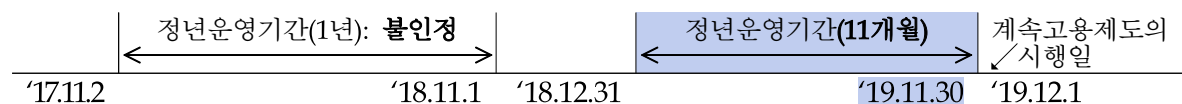
* 예시 : 계속고용제도 시행일이 '19.12.1.인 경우 '19.11.30.부터 단절 없이 1년 이상 정년을 운영하여야 하므로 1년이 되는 '18.12.1.까지의 기간 중 정년을 폐지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아님

< 정년 운영기간 요건 충족 여부 예시 >

① 요건을 충족한 경우



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③ 정년 운영의 사실 여부 확인은,

- 장려금 지원신청 기업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명시적으로 정년이 규정되어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로 판단하여야 하고, 명시적 규정 없이 관례적으로 운영되는 정년은 인정하지 않음

②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명시적인 노사합의를 통해 1년 이상의 정년 연장이나 정년 폐지, 정년 도달일의 다음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의 재고용 등 계속고용제도를 운영 중일 것. 다만 계속고용장려금의 신청일이 계속고용제도의 시행일로부터 1년을 초과한 경우는 제외함.

① '명시적인 노사합의'를 통하여 계속고용제도를 정하여 운영하여야 하므로

- 원칙적으로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명시적으로 정년의 연장 등을 규정한 경우 인정될 수 있으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이 없는 기업의 경우 인사규정, 운영규정 등의 서면 자료도 인정 가능

* 예시 : 상시근로자수 7인 기업인 A기업은 '20.2.15. 사용자 및 근로자전원과 간담회를 열어 '20.3.1.부터 정년을 60세에서 61세로 연장하기로 합의하고, 회사 운영규정에 합의사항을 명시하고, 사용자 및 근로자의 서명을 받음

② 정년을 연장한 경우는 최소 1년 이상의 정년을 연장한 경우만 인정되므로 변경전 정년보다 최소 1년 이상 연장하여야 함

* 「고령자고용법」은 사업주가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 60세로 정한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지원금 신청 기업이 정년을 58세로 정하였다 하더라도 정년은 60세가 되므로 정년을 61세 이상으로 연장하는 경우만 지원 대상이 됨

【정년연장의 인정여부에 대한 판단】

- △ 정년이란 근로자가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면 근로계약이 당연히 종료한다는 취지를 정한 것으로, 정년연장은 해당 근로자 전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어야 하고, 일부 근로자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적용되는 경우는 정년연장으로 보지 않음. 다만,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등의 정년조항이 정년을 일률적으로 연장한다는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정년연장의 합의과정 및 교섭당시 상황, 정년조항의 실제 운영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
- △ 실제 정년 연장이 특별한 심사나 평가 없이 해당 정년에 이른 모든 근로

자에게 적용되어, ‘건강상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라는 조건이 근로자에게 신체장애나 질병이 있어 객관적으로 근로제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근로자를 통상해고 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는 취지로 해석된다면 장려금 지원 가능(다만, 위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음)

【 직종별·직급별 정년이 상이한 경우 기업의 정년의 판단기준】

△ 정년 판단은 단일 정년제를 채택하고 있으면 기업 전체의 정년을, 직종별 또는 직급별로 정년제를 달리 운영하고 있으면 장려금 지원대상 근로자가 속한 직종 또는 직급의 정년을 판단기준으로 삼을 것

③ 정년은 변경하지 않고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 중 정년 이후에도 계속 근로하기를 **희망하는** 자는 정년에 도달한 날의 다음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근로를 개시하는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할 것이라 함은

-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명시적으로 정년에 도달하는 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 정년 도달에 따라 **근로계약을 종료하지 않고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연장하거나**

* 예시 : 계속고용제도의 시행일이 '19.8.1.이고 정년 도달일이 '19.8.31.이라면, 근로계약기간이 최소 '19.9.1.부터 '20.8.31.까지인 경우

- 정년 도달한 날의 다음 날로부터 **3개월이내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계속 근로할 수 있도록 한 경우를 말함**

* 예시 : 계속고용제도의 시행일이 '19.8.1.이고 정년 도달일이 '19.8.31.이라면 근로계약 개시일이 '19.9.1.부터 '19.11.30.인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 계속고용 또는 재고용의 인정여부에 대한 판단 】

△ 계속고용 또는 재고용은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가 정년 이후에도 **계속 근로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일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일부 근로자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계속고용제도의 도입으로 보기는 어려움. 다만,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등에 ‘건강상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등 조건을 부기하여, 근로자가 근로제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재고용을 제외한다는 노사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음(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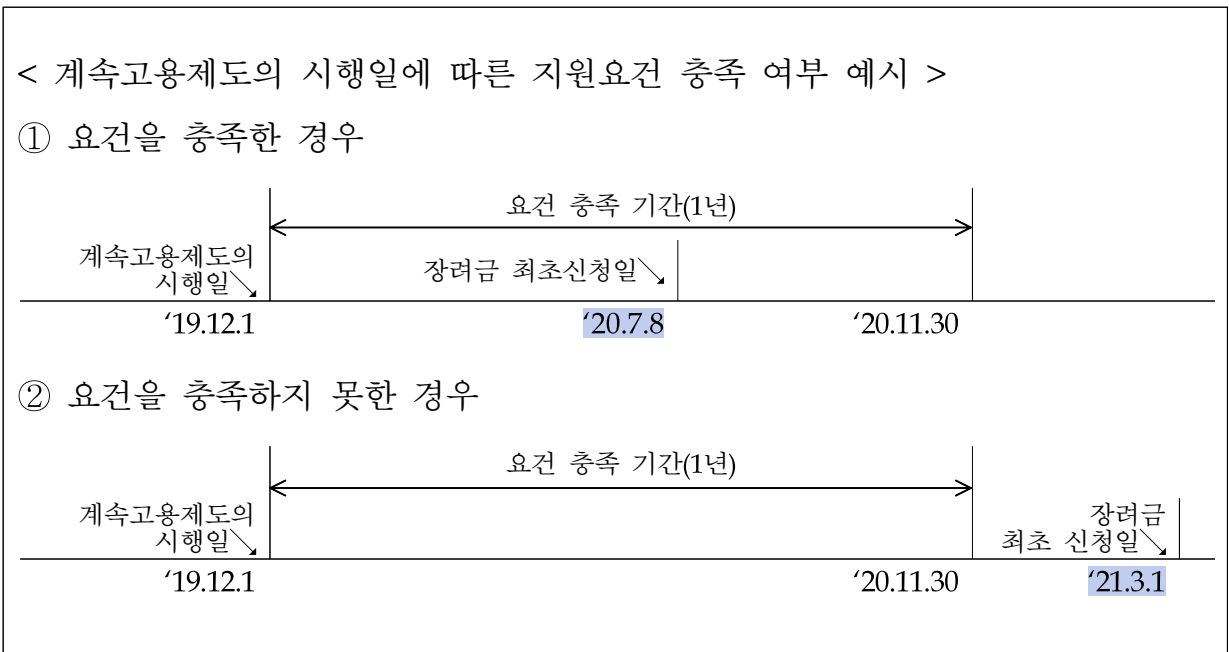
-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정년퇴직자가 희망하는 경우 전원을 의무적으로 재고용하는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다는 근거 규정(재고용기간 등)을 두고 있는지 확인

* 단체협약 등에 노사의 합의로 합리적인 재고용 불가 사유(예: 건강 등의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해당 직무가 폐지된 경우 등)를 명시한 경우 희망자 전원을 대상으로 하지 않아도 지원 대상이 됨

- 퇴직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퇴직금 정산, 근로계약서 재작성 등 당해 근로자에 대한 퇴직조치가 수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님

-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다만, 1년 이상의 고용기간을 정하였더라도, 근로자가 개인적인 이유 등의 사유로 당초 고용 연장한 기간 중 퇴직한 경우는 근무 기간에 한하여 계속고용장려금을 지원)

④ 장려금 최초 신청일이 계속고용제도의 시행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는 경우는 지원대상이 아님



③ 장려금 산정 기준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의 매월 말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합 중 60세 이상 피보험자 수의 합이 100분의 20 이하일 것. 다만, 장려금 산정 기준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의 매월 말 기준 월 평균 피보험자 수가 100인 미만인 사업주는 이를 적용하지 않음

① 60세 이상 피보험자 수 비율 산정은 장려금 산정 기준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년도 각 월 말 현재 피보험자 수 및 60세 이상 피보험자 수를 각각 합하여 나눈 것으로 하되, 소수점 이하는 버림

* 예시 : 단체협약에 '19.12.1.부터 기존 정년을 1년 연장하기로 한 경우, 이후 첫 번째 고용연장조치된 정년 도달 근로자의 정년 도달일('20.2.1.)의 다음 날이 '20.2.2.이라면 '20년의 직전 연도인 '19년도의 1월부터 12월까지 매월 말 기준의 피보험자 수로 산정

$$\frac{1월 말 기준 60세 이상 피보험자수+2월말 기준....+ ...+ 12월말기준 60세이상 피보험자수}{1월 말 기준 피보험자수+2월말 기준....+.....+12월말기준 피보험자수} \times 100$$

② 100인 미만 피보험자 수 산정은 장려금 산정 기준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년도 각 월 말 현재 피보험자수를 합하여 해당 개월 수로 나눈 것으로 하되, 소수점 이하는 버림

* 예시 : 단체협약에 '20.7.1.부터 기존 정년을 1년 연장하기로 한 경우, 이후 첫 번째 고용연장조치된 정년 도달 근로자의 정년 도달일('20.7.1.)의 다음 날이 '20.7.2.이라면 '20년의 직전 연도인 '19년도의 1월부터 12월까지 매월 말 기준의 피보험자 수로 산정

③ 60세 이상 피보험자 수 비율 및 100인 미만 피보험자 수 산정은 계속고용제도의 시행일 이후 정년이 도달하여 최초로 고용연장조치된 근로자의 정년 도달일의 다음 날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를 대상으로 함

* 예시 : 단체협약에 '19.12.1.부터 기존 정년을 1년 연장하기로 한 경우, 이후 첫 번째 고용연장조치된 정년 도달 근로자의 정년 도달일('20.2.1.)의 다음 날이 '20.2.2.이라면 '20년의 직전 연도인 '19년도를 대상으로 60세 이상 피보험자 수 비율 및 100인 미만 피보험자 수를 산정

④ 60세 이상 피보험자 수 비율 및 100인 미만 피보험자 수 산정 기준은 사업주(법인, 개인 사업주) 단위임

Ⅲ

지원 수준 및 한도

1. 지원수준 · 한도

① 계속고용제도의 시행일 이후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 중 재직 중인 피보험자 수에 월 30만원을 곱하여 지급함

① 계속고용제도의 시행일 이후에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만 지원금액 산정시 포함되므로, 계속고용제도의 시행 전에 정년에 도달하여 계속 근로하는 근로자는 지원금액 산정시 포함되지 않음

* 예시 : 계속고용제도 시행일이 '20.2.1.이고 정년이 도래한 근로자가 A와 B가 있는 경우, A의 정년 도달일은 '19.12.1이고, B는 '20.2.5.인 경우 지원금 산정 대상 근로자는 A를 제외한 B만 해당 됨

< 장려금 산정 대상 여부 예시 >

A근로자의 정년 ↘	계속고용제도의 시행일 ↘	B근로자의 정년 ↘
'19.12.1	'20.2.1	'20.2.5

○ A는 지원금 산정시 미포함, B는 지원금 산정시 포함

② 1개월 미만에 대한 장려금은 전체 지원 대상기간 중 잔여기간에 지원금액 (월 30만원)을 일할 계산(원 단위 절사)

* 예시 : 계속고용제도 시행일이 '20.3.1.인 기업에서 '20. 1분기(3월), '20. 2분기(4월, 5월, 6월) 장려금을 신청한 경우로서 '20.3.15.부터 계속 고용된 근로자 3명, '20.4.15.부터 계속 고용된 근로자 2명, '20.5.15.부터 계속 고용된 근로자 1명이 있는 경우 : 5,178,050원

- (1분기) 493,540원 + (2분기) 4,684,510(= 1,220,000 + 1,664,510 + 1,800,000)
- (3월) [30만원/31일×17일(3.15.~3.31.)=164,510원(원 단위 절사)] × 3명 = 493,540원
- (4월) (30만원×3명) + {[30만원/30일×16일(4.15.~4.30.)=160,000원] × 2명} = 900,000원 + 320,000원 = 1,220,000원
- (5월) (30만원×5명) + {[30만원/31일×17일(5.15.~5. 31.)=164,510원(원 단위 절사)] × 1명} = 1,500,000원 + 164,510원 = 1,664,510원
- (6월) (30만원×6명) = 1,800,000원

② 장려금 산정시 아래 근로자는 제외하고 산정하여야 함

- ① 해당 사업에서 정년의 도달일 직전의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계속하여 1년 미만인 사람은 지원금액 산정시 제외됨
 - 따라서, 현 직장에서 근로한 총 기간이 1년을 초과하여도 정년 도달일 직전 1년 이내의 기간에 고용이 단절된 기간이 있는 경우는 제외됨

< 지원금액 산정시 포함 여부 예시 >

① 지원금액 산정시 포함되는 근로자

Timeline: '19.7.1 (근로계약 개시일) → '19.12.1 (계속고용제도의 시행일) → '20.6.30 (고용단절) → '20.11.1 (정년 도달일) → '20.12.1 (재고용일)

* '19.7.1.부터 근무하여 '20.11.1. 정년 도달 후 '20.12.1. 재고용된 경우 ⇒ 정년 도달일 직전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1년 4개월이므로 지원 가능

② 지원금액 산정시 포함되지 않는 근로자

Timeline: '19.7.2 (근로계약 개시일) → '19.12.1 (계속고용제도의 시행일) → '20.1.1 (퇴직) → '20.3.1 (재입사) → '20.11.1 (정년 도달일)

* '19.7.2.부터 '20.1.1.까지 근무하다가 퇴사한 후 '20.3.1. 재입사하여 '20.11.1.에 정년에 도달한 경우, 정년 도달일 직전까지 총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총 14개월(퇴직전 6개월+재입사후 8개월)이지만, 정년 도달일 직전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8개월이므로 지원 제외

- ② 해당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4촌 이내의 혈족·인척
 - *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이사를 기준으로 배우자 여부 등을 판단
- ③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다만, 거주(F-2)·영주(F-5)·결혼 이민자(F-6)는 제외)
- ④ 임금이 「최저임금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최저임금 미만인 사람
- ⑤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1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

⑥ 월 임금이 계속고용장려금의 지원금액 미만인 사람(해당 월에 한하여 적용)

⑦ 월 임금이 6,860,000원*을 초과하는 사람(해당 월에 한하여 적용)

* 근로소득(비과세소득 제외)이 8,230만 원 초과 시 지원 제외(월 소득으로 환산)
↳ 50대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 상위 15% 수준('18.6.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③ 지원금액의 상한액은 분기 단위로 산정하며, 해당 분기 매월 말 피보험자 수 평균의 20%에 90만원을 곱한 금액으로 함. 다만 분기 매월 말 피보험자수 평균이 5인 이하인 경우는 180만 원으로 함

① 지원금액 상한액은 분기 단위별로 적용되므로 지원금액 산정에 포함되는 근로자의 변동에 따라 분기별로 상한액 적용이 달라질 수 있음

- 해당 분기의 상한액은 아래 산정방식에 따른 피보험자 수에 90만원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함

$$\frac{\text{해당 분기 첫째 월의 말 기준 피보험자 수} + \text{해당 분기 둘째 월의 말 기준 피보험자 수} + \text{해당 분기 셋째 월의 말 기준 피보험자 수}}{3\text{개월}} \times 0.2 \times 90\text{만 원}$$

* 소숫점 첫째자리에서 올림

* 예시 : 1월말 피보험자수 30명, 2월말 50명, 3월말 30명인 경우, 분기 평균 피보험자의 20%(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올림)는 8명 $[(30+50+30)/3 \times 0.2]$ 이므로, 720만 원 $(=8 \times 90\text{만 원})$ 이 해당 분기의 상한액이 됨

② 다만, 해당 분기의 평균 피보험자가 5인 미만인 경우는 해당 분기의 상한액은 180만 원이 됨

③ 지원금액 상한액 산정 기준은 사업주(법인, 개인 사업주) 단위임

2. 지원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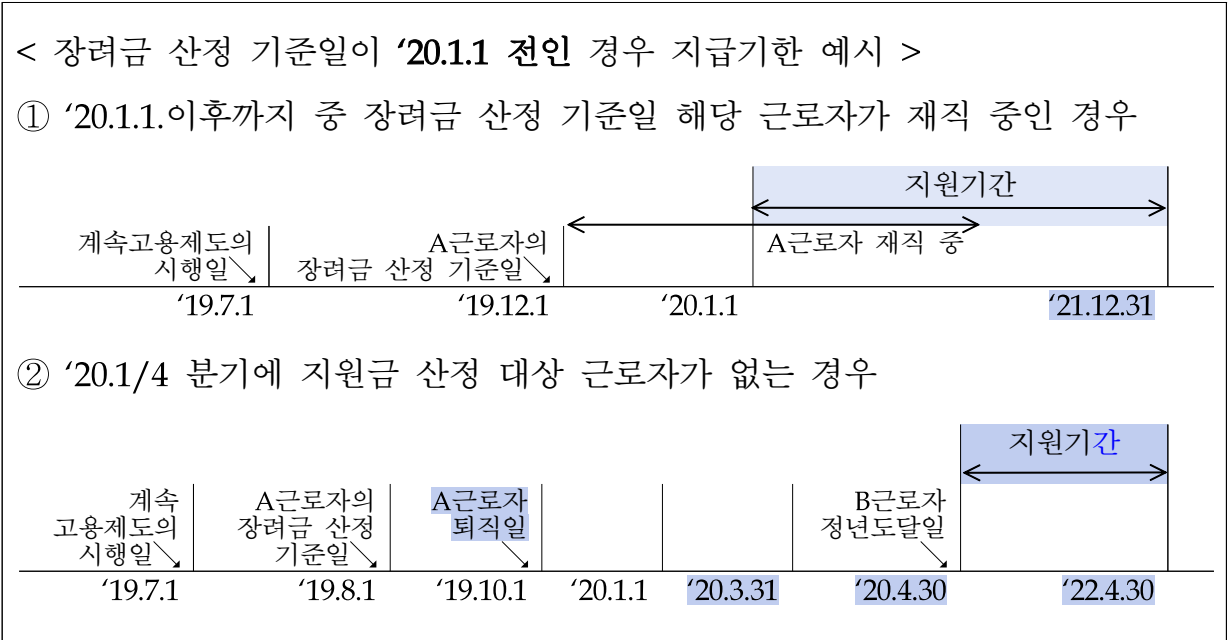
① 장려금은 매 분기별로 지급함

① 장려금은 매 분기별로 지급함

② 장려금은 '20.1.1이후 기간을 대상으로 매 분기별로 지급하므로, 계속고용제도의 시행일 이후 장려금 산정 기준일이 '20.1.1. 이전인지 여부에 따라 지원기한이 정해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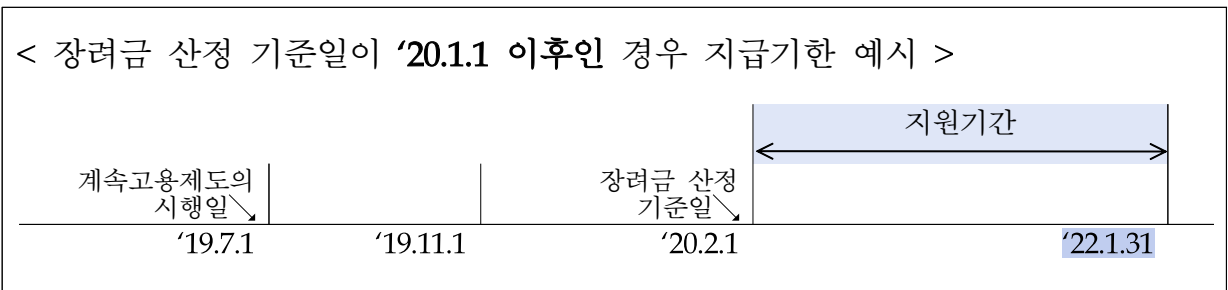
① 장려금 산정 기준일이 '20.1.1.전인 경우에는

- '20.1.1.부터 2년간 지원하며, 다만 '20. 1/4분기 중에 지원금액 산정 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없는 경우 '20.1.1.이후 정년에 도달하여 고용연장조치에 의해 계속 고용된 첫 번째 근로자의 정년 도달일 다음 날부터 2년간 지원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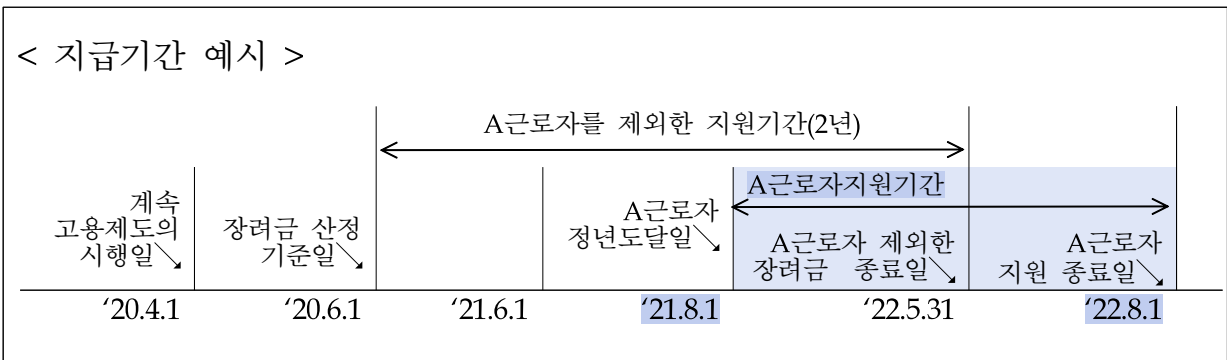
② 장려금 산정 기준일이 '20.1.1. 이후인 경우에는

- 장려금 산정 기준일부터 2년간 지원



③ 정년 도달일로부터 장려금 지급기간 종료일까지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까지 지원금을 지급함

① 장려금 지급기간 동안 1년 미만의 장려금 지급 대상자는 2년의 지원기간이 경과하더라도 해당 근로자의 정년 도달일의 다음 날부터 1년까지 지원



<지원금 계산 사례 I (정년을 2년 연장한 경우)>

□ '17.1.1.부터 정년 60세를 운영 중인 기업이 '20.1.1. 노사합의를 통해 취업규칙을 변경하면서 ' 이후 최초로 근로자A는 '20.3.31. 정년에 도달하여 '20.4.1.부터 고용이 2년간 연장되고, 근로자B는 '21.10.1. 근로자E는 '22.1.1. 근로자F는 '22.3.1. 근로자G는 '22.7.1.부터 고용이 2년간 연장(계속 고용 가정)

▲ A기업의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 '20.3.1. ▲ 장려금 산정 기준일 : '20.4.1. 장려금 지원기간 종료일(최대) : '23.3.31.

* 장려금 지원기간(2년) 중 정년 도달일로부터 장려금 지급기간 종료일까지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근로자 도달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까지 지원금을 지급

	장려금 산정 기준일												장려금 지원기간 종료일														
	20.4.1			20.7.1			21.1.1			21.4.1			21.10.1			22.1.1		3.1	3.31	6.30							
A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⑯	⑰	⑱	⑲	⑳	㉑	㉒	㉓	㉔			
B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⑯	⑰	⑱	⑲	⑳	㉑	×	×	×
C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	×	×	
D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E																					①	②	③	④	⑤	⑥	
F																							①	②	③	④	
G																											

<지원금 계산 사례 II(정년을 1년 연장한 경우)>

■ '17.1.1.부터 정년 60세를 운영 중인 A기업이 '20.1.15. 노사간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20.2.1.부터 기존 정년 60세 60세에 도달하는 근로자 2명이 '20.3.1.부터 변경된 정년에 따라 고용이 1년간 연장되고, 이후 '20.6.16.(정년도달일 '20.10.1.(정년도달일 '20.9.30) 3명, '21.4.1.(정년도달일 '21.3.31) 2명, '21.10.1.(정년도달일 '21.9.30) 2명, 22.2.1.(정년도달일 '22.4.1.(정년도달일 '22.3.31)을 1년간 고용연장 조치

시 기	장려금 산정 기준일										장려금 지원기간 1년										장려금 지원기간 종료일									
	20.2.15.		20.4.1			20.6.1			20.8.1		20.10.1		20.12.1		21.2.1		21.4.1		21.6.1		21.8.1		21.10.1		21.12.1		22.2.1		22.4.1	
	20.3.1.		2	3	4	5	6	7	8	9	10	11	21.2.28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2.2.28			
지원개월수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고용연장기간>																														
㉠김00 (20.3.1~21.2.28.)	①		①	①	①	①	①	①	①	①	①	①	①																	
㉡박00 (20.3.1~21.2.28.)	②		②	②	②	②	②	②	②	②	②	②	②																	
㉢홍00 (20.6.16~21.6.15.)				④	③	③	③	③	③	③	③	③	③	①	①	①	①													
㉣배00 (20.7.1~21.6.30.)					④	④	④	④	④	④	④	④	④	②	②	②	①													
㉤이00 (20.7.1~21.4.31.), 자진퇴사					⑤	⑤	⑤	⑤	⑤	⑤	⑤	⑤	⑤	③	③															
㉥여00 (20.10.1~21.9.30.)								⑥	⑥	⑥	⑥	⑥	⑥	④	④	③	②	①	①	①										
㉦장00 (20.10.1~21.9.30.)								⑦	⑦	⑦	⑦	⑦	⑦	⑤	⑤	④	③	②	②	②										
㉧황00 (20.10.1~21.6.15.)								⑧	⑧	⑧	⑧	⑧	⑧	⑥	⑥	⑤	④													
㉨은00 (21.4.1~22.3.31.)															⑦	⑥	④	③	③	③	①	①	①	①	①	①	①			
㉩문00 (21.4.1~22.12.31.) 자진퇴사															⑧	⑦	⑤	④	④	④	②	②	②							
㉪승00 (21.10.1~22.9.30.)																					③	③	③	②	②	②	①			
㉫최00 (21.10.1~22.3.31.), 자진퇴사																					④	④	④	③	③	③	②			
㉬석00 (22.2.1~23.1.31.)																									④	④	②			
㉭안00 (22.3.1~22.2.28.)																										⑤	③			
㉮은00 (22.4.1~24.3.31.28.)																												x		
분기지원한도(명, 피보험자의 20%)/분기한도금액(만원)	9명(×90만원) 810만원		9명(×90만원) 810만원			9명(×90만원) 720만원			7명(×90만원) 630만원		7명(×90만원) 630만원		9명(×90만원) 810만원		9명(×90만원) 810만원		7명(×90만원) 630만원		7명(×90만원) 630만원											
고용연장자(명)	2		2	2	3	5	5	5	8	8	8	8	8	6	8	7	7	4	4	4	4	4	4	3	4	5	3			
월단위지원금(만원)	60		60	60	60	150	150	150	240	240	240	240	240	180	240	210	150	120	120	120	120	120	120	90	120	150	90			
월단위미만지원금			15												30															
월별지원액(분기누적)	60		60	120	195	150	300	450	240	480	720	240	480	660	240	450	630	120	240	360	120	240	360	90	210	360	90			
분기별 실 지원액	60		195			450			630		630		630		630		360		360		360		360		360		360			

㉠ 15만원(=30만원(지원단가)×15일(6.16~6.30)/30일) ㉡ 15만원(=30만원(지원단가)×15일(6.1~6.15)/30일) ㉢ 15만원(=30만원(지원단가)×15일(6.16~6.30)/30일)

<지원금 계산 사례 III(재고용을 통해 2년 고용연장한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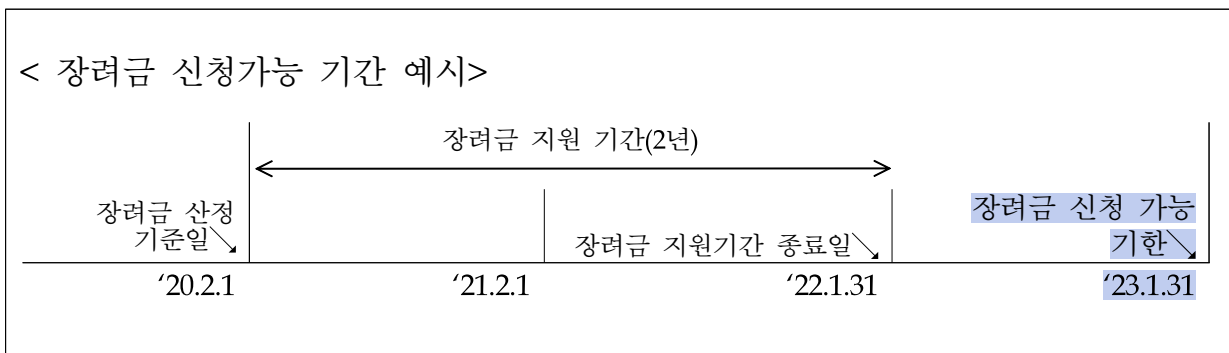
■ '17.1.1.부터 정년 60세를 운영 중인 B기업이 '20.1.15. 노사간 취업규칙을 변경하면서 '20.2.1.부터 정년이 도래한 근로자가 회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 2명이 '20.3.1.부터 고용이 2년간 연장되고, 이후 '20.6.16.(정년도달일 '20.6.15) 1명, '20.7.1.(정년도달일
 '21.4.1.(정년도달일 '21.3.31) 2명, '21.10.1.(정년도달일 각 '21.7.31, '21.9.30) 2명, '22.2.1.(정년도달일 '22.1.31) 1명, '22.5.1.(정년
 1명을 2년간 고용연장 조치한 경우

시 기	장려금 산정 기준일												장려금 지원기간 1년												장려금 지원기간 종료일			
	2021	20.4.1	20.6.1	20.8.1	20.10.1	20.12.1	21.2.1	21.4.1	21.6.1	21.8.1	21.10.1	21.12.1	22.2.1	22.4.1	20.3.1	20.4.1	20.6.1	20.8.1	20.10.1	20.12.1	21.2.1	21.4.1	21.6.1	21.8.1	21.10.1	21.12.1	22.2.1	22.4.1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지원개월수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고용연장기간>																												
① 김00 (20.3.1~22.2.28)		①	①	①	①	①	①	①	①	①	①	①	①	①	①	①	①	①	①	①	①	①	①	①	①	①		
② 박00 (20.3.1~22.2.28)		②	②	②	②	②	②	②	②	②	②	②	②	②	②	②	②	②	②	②	②	②	②	②	②	②	②	
③ 홍00 (20.6.16~22.6.15)					①	③	③	③	③	③	③	③	③	③	③	③	③	③	③	③	③	③	③	③	③	③	③	x
④ 배00 (20.7.1~22.6.30)						④	④	④	④	④	④	④	④	④	④	④	④	④	④	④	④	④	④	④	④	④	④	x
⑤ 이00 (20.7.1~21.7.31) 자진퇴사						⑤	⑤	⑤	⑤	⑤	⑤	⑤	⑤	⑤	⑤	⑤	⑤	⑤										
⑥ 여00 (20.10.1~22.9.30)									⑥	⑥	⑥	⑥	⑥	⑥	⑥	⑥	⑥	⑥	⑤	⑤	⑤	⑤	⑤	⑤	⑤	⑤	x	
⑦ 장00 (20.10.1~22.9.30)									⑦	⑦	⑦	⑦	⑦	⑦	⑦	⑦	⑦	⑦	⑥	⑥	⑥	⑥	⑥	⑥	⑥	⑥	x	
⑧ 황00 (20.10.1~21.6.15) 자진퇴사									⑧	⑧	⑧	⑧	⑧	⑧	⑧	⑧	⑧											
⑨ 은00 (21.4.1~23.3.31)																⑨	⑨	⑧	⑧	⑦	⑦	⑦	⑦	⑦	⑦	⑦	①	
⑩ 문00 (21.4.1~21.12.31) 자진퇴사																⑩	⑩	⑨	⑨	⑧	⑧	⑧	⑧	⑧	⑧	⑧	②	
⑪ 최0(21.10.1~23.9.30) 정년도래일 21.7.31.																											③	
⑫ 송00 (21.10.1~23.9.30)																											④	
⑬ 석00(22.2.1~24.1.31)																											⑤	
⑭ 안0(22.5.1~24.4.30) 정년도래일 22.2.28.																												
⑮ 노0(22.6.1~24.5.31) 정년도래일 22.2.28.																												
분기지원한도(명, 피보험자의 20%)/ 분기한도금액(만원)		10명(×90만원) 900만원	10명(×90만원) 900만원	10명(×90만원) 900만원	10명(×90만원) 900만원	10명(×90만원) 900만원	10명(×90만원) 900만원	10명(×90만원) 900만원	10명(×90만원) 900만원	9명(×90만원) 810만원	10명(×90만원) 900만원	8명(×90만원) 720만원	10명(×90만원) 900만원	10명(×90만원) 900만원	10명(×90만원) 900만원	10명(×90만원) 900만원	8명(×90만원) 720만원	10명(×90만원) 900만원	10명(×90만원) 900만원	10명(×90만원) 900만원	10명(×90만원) 900만원	10명(×90만원) 900만원	10명(×90만원) 900만원	10명(×90만원) 900만원	10명(×90만원) 900만원	10명(×90만원) 900만원	10명(×90만원) 900만원	
고용연장자(명)		2	2	2	3	5	5	5	8	8	8	8	8	8	10	10	10	9	8	8	10	10	10	10	10	11	5	
월단위지원금(만원)		60	60	60	60	150	150	150	240	240	240	240	240	240	300	300	270	270	240	240	300	300	300	300	330	150		
월단위미만지원금					15												15											
월별지원액(분기누적)		60	60	120	195	150	300	450	240	480	720	240	480	720	300	600	885	270	510	750	300	600	900	300	630	780		
분기별 실 지원액		60			195			450			720			720			810			750			720			7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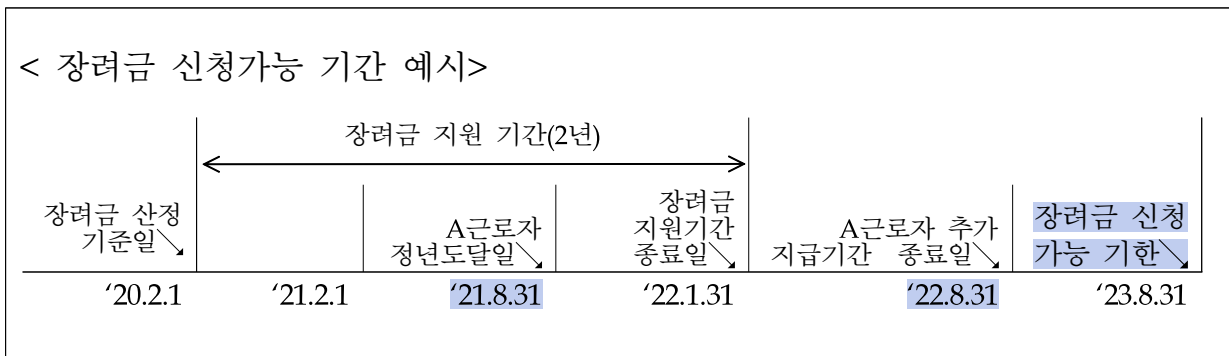
▶ 15만원(=30만원(지원단가)×15일(6.16~6.30)/30일) ◀ 15만원(=30만원(지원단가)×15일(6.1~6.15)/30일)

1] 계속고용장려금의 신청

- ① 계속고용장려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해당 분기 말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관련 규정 별지 제1호서식의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여야 함
- 다만, 장려금 지원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음



- 정년 도달일로부터 장려금 지원기간 종료일까지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장려금을 지급하므로, 해당 근로자의 지급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하여서는 지원금 신청 불가



- 정년 도달일로부터 장려금 지급기간 종료일까지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근로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정년 도달일이 지급기간 종료일로부터 가장 가까운(정년 도달일이 가장 늦은) 근로자의 지급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지원금 신청 가능

- ② 원칙적으로 분기별 신청이나, 장려금 최초 신청일이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로부터 1년을 초과한 경우는 지원이 제외되므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하여 사업주 신청에 따라 1~2개월 단위 신청도 가능
- ③ 지급신청서는 사업주 단위로 제출하여야 함. 따라서 고용연장된 근로자가 해당 사업의 지점(지사) 근무자라도 본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청
 - 고용보험법에 따른 권리와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으며, 따라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여부, 60세 이상 피보험자 비율, 피보험자수 100인 미만 여부, 해당 분기 지원인원 한도 산정 등은 사업주(법인 또는 개인 사업주) 단위로 함
- ④ 지급신청서는 온라인(www.ei.go.kr)으로도 제출 가능

② 제출 서류

- ① 계속고용 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사본
- ② 계속고용 된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및 임금 지급 증명 서류
 - 계속고용 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는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고 장려금을 신청하도록 조치
- ③ 기업의 정년이 고령자고용법 제19조에 따라 60세 이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을 통해 신청 기업의 정년을 반드시 확인
 - 10인 미만 기업 등의 이유로 취업규칙, 단체협약, 기타 정년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가 미비 되어 정년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동 자료를 제출토록 조치하고, 기업별 고용보험 자격상실 확인 등과 현장실사 등을 통한 사업주 및 근로자 확인 등을 거쳐 요건 확인 후 지원 여부 결정(소급작성 등은 불인정)
- ④ 정년을 연장 또는 폐지의 경우, 기존에 60세 이상으로 정한 정년을 폐지하거나 이를 1년 이상 연장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기존에 신고된 취업규칙(근로개선지도과 협조)의 종전 정년과 연장정년 확인

- 기업별 고용보험 자격상실 자료조회 등을 통한 정년연장 확인
 - 유노조 기업의 경우 단체협약상의 정년 및 연장사실 등을 노사 확인
- ⑤ 기존의 정년을 유지한 채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 전원 재고용한다는 계속고용제도 도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기업에서 재고용 대상자를 선별적으로 선발하는 경우는 지원 제외, 다만 신체적 이유 등의 합리적 사유로 제외 대상자를 두는 등 노사가 합의하여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계속하여 고용할 근로자를 정한 경우인지를 확인 후 지원 여부를 결정

③ 서류 보완 및 반려

-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출된 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사업주에게 상당한 기한을 정하여 보완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 기간, 횟수 및 신청 서류 반려에 대한 처리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를 준용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민원문서의 보완 절차 및 방법 등)】

- ①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민원인에게 민원문서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문서 또는 구술 등으로 하되, 민원인이 특별히 요청한 경우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완 요구를 받은 민원인이 보완 요구를 받은 기간 내에 보완을 할 수 없음을 이유로 보완에 필요한 기간을 분명하게 밝혀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다시 보완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의 기간 연장 요청은 2회로 한정한다.
- ③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정한 보완기간 또는 이 조 제2항 전단에 따라 다시 정한 보완기간 내에 민원문서를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민원문서의 보완에 필요한 기간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민법」 제156조, 제157조 및 제159조부터 제16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장려금 지급

-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장려금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지급요건 충족 여부 등을 확인하여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장려금을 지급하고, '지급 또는 부

지급 결정 통지서(관련 규정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지급 결정 여부를 해당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함

④ 장려금의 상호조정 등

-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다른 장려금 또는 지원금 등과 계속고용장려금이 중복될 경우 다음 원칙에 따라 상호 조정하여 지급하여야 함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고용유지 지원금의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그 고용유지 조치기간에 계속고용장려금의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고 계속고용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지원금만 지급
 - 사업주가 동일한 근로자로 인하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지원금 및 장려금과 계속고용장려금의 지급요건에 동시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의 신청에 의하여 하나의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1호^{가)} 및 제2호^{나)}에 따른 각 지원금 중 어느 하나의 지원금을 받고 있는 사업주가 해당 지원금을 받는 기간에 계속고용장려금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의 신청에 의하여 계속고용장려금을 지급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에 따른 지원금 및 장려금】

△ 1. 제17조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금

제17조(고용창출에 대한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에게 임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근로시간이 감소된 근로자에 대한 임금의 일부와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의 일부도 지원할 수 있으며, 제2호의 경우에는 시설의 설치비의 일부도 지원할 수 있다

1. 근로시간 단축, 교대근로 개편, 정기적인 교육훈련 또는 안식휴가 부여 등(이하 "일자리 함께하기"라 한다)을 통하여 실업자를 고용함으로써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2.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하여 고용환경을 개선하고 실업자를 고용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3. 직무의 분할, 근무체계 개편 또는 시간제직무 개발 등을 통하여 실업자를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시간제로 근무하는 형태로 하여 새로 고

용하는 경우

4.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성장유망업종, 인력수급 불일치 업종, 국내복귀기업 또는 지역특화산업 등 고용지원이 필요한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이 실업자를 고용하는 경우
5.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업종에 해당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 자(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를 고용하는 경우
6. 제28조에 따른 임금피크제, 제28조의2에 따른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 제28조의3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도입 또는 그 밖의 임금체계 개편 등을 통하여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 실업자를 고용하는 경우
7.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가 근무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하는 직무에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를 새로 고용하는 경우

- △ 2. 제24조에 따른 지역고용촉진 지원금
- △ 3. 제25조에 따른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 △ 4. 제25조의2에 따른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 △ 5. 제26조에 따른 고용촉진장려금
- △ 6. 제28조의3에 따른 사업주에 대한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 △ 7.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 △ 8. 제35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주에 대한 지원금

제35조(고용안정과 취업의 촉진) 법 제2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9.3.12, 2009.5.28, 2010.2.8, 2010.12.31, 2014.12.31, 2015.12.4, 2016.7.19, 2017.6.27>

1. 피보험자등의 고용안정과 취업의 촉진에 관한 교육사업·홍보사업
2. 피보험자등의 고용안정 및 취업 촉진을 위한 직업소개, 직업진로지도, 채용지원, 장기근속지원 및 전직지원서비스사업 등 취업지원사업
3. 고령자·여성·장애인인 피보험자등의 고용환경개선사업
4.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 등에 대한 지원사업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고용안정 등에 대한 지원사업
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기간제근로자(이하 "기간제근로자"라 한다)

- 나.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파견근로자
-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 라.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에 따른 보건관리자
- 마.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의 단시간근로자
- 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주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아 생활하며, 노무를 제공할 때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람
- 6.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의 단시간근로자로의 전환을 지원하는 사업
- 7. 피보험자등의 근무형태 변경 등 고용환경개선을 통한 일·가정 양립 지원사업

△ 9. 제38조제4항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운영비용 지원금

-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노사발전재단 등의 일터혁신컨설팅,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의 생애경력설계서비스에 참여한 사업주에 대해 계속고용장려금을 우선 지원할 수 있음

【노사발전재단 등의 일터혁신컨설팅】

- △ 노사참여를 기반으로 일하는 방식 개선을 통해 생산성 향상과 노동자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사업장에 컨설팅 지원
 - 사업장에서 필요한 분야에 대해 전문 컨설턴트가 컨설팅을 실시
 - 컨설팅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노사발전재단을 통해 신청 가능
- * 컨설팅 영역(9개): 노사파트너십체계 구축, 작업조직·작업환경 개선, 고용문화 개선, 임금체계 개선, 평가체계 개선, 장시간근로 개선, 평생학습체계 구축, 장년고용안정 체계구축, 비정규직 고용구조 개선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의 생애경력설계서비스】

- △ 장년에 진입하는 40대부터 생애경력설계를 통해 평생직업생활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 재취업 계획 수립 지원 등 기회를 제공하여, 인생 후반부의 계획 수립과 경력관리·능력개발 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전국 31개('19년 기준)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중

① 지도 점검

-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장려금의 지원을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대상자의 명부, 계속고용 된 근로자의 임금 지급 상황,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 여부 등을 점검하여야 함
-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필요시 사업주 등에게 사업시행과 관련된 보고, 관계 서류의 제출 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음(고용보험법 제 108조제1항)
 - 위의 요구에 불응하여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은 문서를 제출한 자 또는 출석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할 수 있음(고용보험법 제118조제1항제4호)
- ③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필요시 소속직원에게 사업주 등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장부 등 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음(고용보험법 제109조제1항)
 - 이에 대하여 질문에 답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자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고용보험법 제118조제1항제6호)

② 반환명령

-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고용보험법」 제35조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계속고용장려금을 지급 받거나 받으려는 사업주에게는 해당 장려금 또는 지급 받으려는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에 대한 반환을 명하여야 함
-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착오 등으로 사업주가 지원금을 지급 받은 경우에는 착오 등으로 지급 받은 금액에 대한 반환을 명령하여야 함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급 규정

고용노동부고시 제2019 - 93호

2019년 12월 31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4에 따른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이하 “계속고용장려금”이라 한다)의 지원요건, 지원대상 사업주의 범위, 지원 수준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계속고용제도’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정년을 운영 중인 사업주가 정년을 연장 또는 폐지하거나, 정년의 변경 없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하여 고용하거나 재고용하는 것을 말한다.
2. ‘계속고용제도의 시행일’이란 노사합의 등을 통해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계속고용제도의 시행이 개시되는 날을 말한다.
3. ‘장려금 산정 기준일’이란 처음으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춘 근로자의 정년 도달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

가.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이후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할 것

나. 계속고용제도에 따른 고용연장조치에 의해 계속 고용될 것

제3조(지원대상 사업주) ① 고용노동부장관이 계속고용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는 사업주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

용산재보험료징수법” 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대상기업
 2.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계속고용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기관), 지방공기업(「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지정된 기관)
 2. 부동산업, 일반유흥업, 베탱업 등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주
 3.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4.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른 보험료 등을 체납한 사업주

제2장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의 지원요건 등

제4조(지원요건) 계속고용장려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계속고용제도의 시행일 직전 계속하여 1년 이상 「고령자고용법」 제19조에 따른 정년을 정하여 운영 중일 것
2.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명시적인 노사 합의를 통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속고용제도를 운영 중일 것. 다만 계속고용장려금의 최초 신청일이 계속고용제도의 시행일로부터 1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가. 정년의 연장. 다만, 현재 연장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나. 정년의 폐지

다. 정년의 변경 없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 중 정년 이후에도 계속 근로하기를 희망하는 자는 정년에 도달한 날의 다음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근로를 개시하는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할 것. 다만,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계속하여 고용할 근로자를 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3. 장려금 산정 기준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의 매월 말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합 중 60세 이상인 피보험자 수의 합이 100분의 20 이하일 것. 다만, 장려금 산정 기준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의 매월 말 기준 월 평균 피보험자 수가 100인 미만인 사업주에게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지원수준 및 지원한도) ① 계속고용장려금의 지원금액은 계속고용제도의 시행일 이후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 중 계속고용제도의 적용을 받아 재직 중인 피보험자의 수에 월 30만원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은 매 분기별로 지급한다.

③ 분기별 지원금액은 해당 분기 매월 말 피보험자 수 평균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피보험자 수(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올림한다)에 90만원을 곱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분기 매월 말 피보험자 수 평균이 5인 이하인 경우에는 매 분기 지원금액의 한도를 180만원으로 한다.

제6조(지원제외 근로자)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피보험자는 지원금액의 산정대상 근로자에서 제외한다.

1. 해당 사업에서 정년의 도달일 직전의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계속하여 1년 미만인 사람
2. 해당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4촌 이내의 혈족·인척
3.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다만, 거주(F-2)·영주(F-5)·결혼이민자(F-6)는 제외한다.
4. 임금이 「최저임금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최저임금 미만인 사람
5.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
6. 해당 근로자의 임금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해당 월

에 한하여 적용한다)

가. 월 임금이 계속고용장려금의 지원금액 미만인 사람

나. 월 임금이 6,860,000원을 초과하는 사람

제7조(지급기간) ① 계속고용장려금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 동안 지급한다.

1. 장려금 산정 기준일이 2020년 1월 1일 전인 경우 : 2020년 1월 1일부터 2년까지 지원. 다만 2020년 1/4분기 중에 제5조에 따른 지원금액 산정 대상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2020년 1월 1일 이후 정년에 도달하고 고용연장조치에 의해 계속 고용된 첫 번째 근로자의 정년 도달일 다음 날부터 2년까지 지원
2. 장려금 산정 기준일이 2020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 : 장려금 산정 기준일로부터 2년까지 지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년 도달일로부터 제1항에 따른 장려금 지급기간 종료일까지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까지 제5조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한다.

제3장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의 지원신청 등

제8조(계속고용장려금의 신청 등) ① 계속고용장려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해당 분기 말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에 따른 지급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다.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금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지급요건 충족여부 등을 확인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지급결정 여부를 통지하여야 하고, 지급결정을 한 경우에는 계속고용장려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계속고용장려금의 상호조정 등)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속고용장려금 등을 상호 조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1.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고용유지 지원금의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그 고용유지 조치기간에 계속고용장려금의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고 계속고용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지원금만 지급
 2. 사업주가 동일한 근로자로 인하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지원금 및 장려금과 계속고용장려금의 지급요건에 동시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의 신청에 의하여 하나의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
 3.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각 지원금 중 어느 하나의 지원금을 받고 있는 사업주가 해당 지원금을 받는 기간에 계속고용장려금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의 신청에 의하여 계속고용장려금을 지급
-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노사발전재단 등의 일터혁신 컨설팅,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의 생애경력설계서비스에 참여한 사업주에 대해 계속고용장려금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계속고용장려금 지급 제한 등)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고용보험법」 제35조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계속고용장려금을 지급받거나 받으려는 사업주에게는 해당 장려금 또는 지급받으려는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에 대한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착오 등으로 사업주가 지원금을 지원 받은 경우에는 착오 등으로 지원 받은 금액에 대한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제11조(재검토 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별지 제1호서식 >

년 제 차(분기)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서

(정년연장 정년폐지 계속고용(재고용))

※ 제2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 표시를 합니다. (제1쪽)

1. 사업장 현황(모든 사항 필수 기재)

사업장명		대표자	
사업장 주소		사업장관리번호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중견기업 여부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비해당	* 한국중견기업연합회(www.ahpek.or.kr)에서 발급한 「중견기업 확인서」로 확인	
정년 도입일(시행일)	()	정년 연령	

2. 신청 내용

신청기간 ^①	년 월 ~ 년 월(개월)	년 월 ~ 년 월(개월)	년 월 ~ 년 월(개월)
유형 ^②	<input type="checkbox"/> 정년연장	<input type="checkbox"/> 정년폐지	<input type="checkbox"/> 계속고용(재고용)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③			
장려금 산정기준일 ^④			
인원 ^⑤			
총개월수 ^⑥			
1개월 미만에 대한 장려금 ^⑦			
장려금 총 신청액			
계좌번호	은행 (예금주:)		

신청대상 근로자	임금이 최저임금 미만인지 여부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비해당
관련사항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4촌 이내의 혈족·인척 해당 여부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비해당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미만인지 여부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비해당

3. 계속고용제도 도입을 위한 고령자 고용관리 개선조치 실시 내용(실시한 경우만 해당 내용 체크)

- 노사발전재단 등의 일터혁신컨설팅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의 생애경력설계서비스
 임금체계 개편 직무재설계 고령자 적합직종 개발 고령자작업훈련 개발
 고령자를 위한 고용환경 개선 조치 기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4 및 관련 고시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 (인)

○ ○ 지방고용노동청(○ ○ 지청)장 귀하

※ 구비 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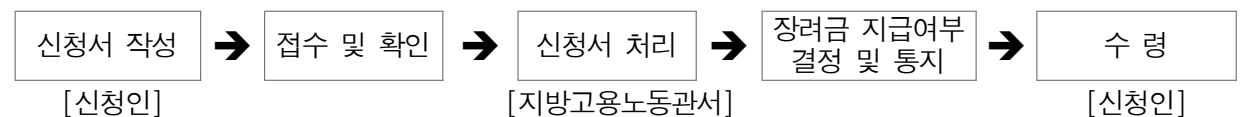
- 계속고용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사본
- 계속고용된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및 임금지급 증빙서류
- 계속고용제도(정년을 연장 또는 폐지하거나 정년의 변경 없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하여 고용하거나 재고용하는 제도) 도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취업규칙, 단체협약, 인사규정, 운영규정 등)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 14일			
선 략	담 당		팀 장		과 장		청 장		지 청 장		결재 연월일
											. . .

작성 방법

- ①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장려금 산정 기준일(④번 참조)로부터 2년까지 지원. 다만 정년 도달일로부터 장려금 지급기간 종료일(2년)까지 1년을 초과하지 않은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까지 지원함
 - ※ 장려금의 지원금액은 계속고용제도의 시행일(③번 참조) 이후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 중 계속고용제도의 적용을 받아 재직 중인 피보험자의 수에 월 해당 고시금액을 곱한 금액임
 - ② 아래 중 해당하는 계속고용제도 유형에 표시
 - * 정년연장 : 현 정년을 1년 이상 연장하는 경우, 정년폐지 : 현 정년을 폐지한 경우
 계속고용(재고용) : 현 정년을 유지한 채 정년 도달 근로자를 계속고용 또는 재고용 하는 경우
 - ③ ‘계속고용제도의 시행일’이란 노사합의 등을 통해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계속고용제도의 시행이 시작되는 날을 말함.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의 최초 신청일이 계속고용제도의 시행일로부터 1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지원이 제외됨.)
 - ④ 장려금 산정 기준일’이란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이후 정년에 도달하여 계속고용제도에 따른 고용연장조치로 계속 고용된 최초 근로자의 정년 도달일 다음 날을 말함(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의 산정 초일)
 - * 장려금 산정 기준일이 ‘20.1.1. 전인 경우 : ‘20.1.1.부터 2년까지 지원. 다만 ‘20년 1/4분기 중에 지원금액 산정 대상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20.1.1. 이후 정년에 도달하고 고용연장조치에 의해 계속 고용된 첫 번째 근로자의 정년 도달일 다음 날부터 2년까지 지원
 - * 장려금 산정 기준일이 ‘20.1.1. 이후인 경우 : 장려금 산정 기준일로부터 2년까지 지원
 - ⑤ 지원 신청기간에 계속고용제도 시행에 따라 고용이 연장되어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 대상이 되는 고령자 수를 기재
 - ⑥ 총 개월 수는 ⑤의 계속고용 된 지원대상 근로자 전체에 대한 각각의 해당 신청기간 내의 개월 수의 합을 표시하며, 달력의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모두 포함되는 경우 1개월로 하여 산정함. <예시> 계속고용제도 시행일이 ‘20.10.1.인 사업장에서 ‘20. 4분기(10월, 11월, 12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20.10.15.부터 계속고용 된 근로자 3명, ‘20. 11.15.부터 계속고용 된 근로자 2명, ‘20.12.15.부터 계속고용 된 근로자 1명이 있는 경우
 ⇒ (3명×2개월) + (2명×1개월) = 8개월(6개월+2개월)
 - ⑦ ⑥의 1개월 미만에 대한 장려금은 전체 지원 대상기간 중 잔여기간에 고시된 장려금을 일할 계산하여 기재
 - * [〈해당 고시금액〉/31일×17일(10.15.~10.31.)×3명] + [〈해당 고시금액〉/30일×16일(11.15. ~11.30.)×2명] + [〈해당 고시금액〉/31일×17일(12.15.~12. 31.)×1명]로 산정하여 적되, 원 이하 절사 * 해당 고시금액은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급 규정” 참고
- (유의사항) 계속고용제도의 시행일 직전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정년을 정하여 운영 중인 사업장에 한하여 지원합니다.
- ※ 구비서류를 준비함에 있어서 관련 규정 및 신청서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 절차



작성 방법

- 지원금 신청 개월수 : 매월 첫날부터 말일까지를 1개월로 하여 산정합니다.
 - 예시) 계속고용제도 시행일이 '20.10.1.인 사업장에서 '20. 4분기(10월, 11월, 12월)를 신청한 경우, '20.10.15.부터 계속고용 된 근로자는 2개월(11.1. ~ 12. 31.)이라고 기재
- 1개월 미만에 대한 지원금 : 매년 고시된 지원금을 일할 계산하여 적습니다.
 - 예시) 계속고용제도 시행일이 '20.10.1인 사업장에서 '20. 4분기(10월, 11월, 12월)를 신청한 경우, '20.10.15.부터 계속고용 된 근로자의 금액은 [$\text{해당 고시금액} \times 17\text{일}(10.15. \sim 10.31.) / 31\text{일}$]로 산정하여 적되, 원 이하는 절사

년 분기 정년연장·폐지 명세

성명	주민등록번호	종전 정년 도달일	연장된 정년 도달일	장 려 금 산정기간	장려금 신청 개월수	1개월 미만에 대한 장려금
계					개월	원

작성방법

- 지원금 신청 개월수 : 매월 첫날부터 말일까지를 1개월로 하여 산정합니다.
 - 예시) 계속고용제도 시행일이 '20.10.1.인 사업장에서 '20. 4분기(10월, 11월, 12월)를 신청한 경우, '20.10.15.부터 계속고용 된 근로자는 2개월(11.1. ~ 12. 31.)이라고 기재
- 1개월 미만에 대한 지원금 : 매년 고시된 지원금을 일할 계산하여 적습니다.
 - 예시) 계속고용제도 시행일이 '20.10.15.인 사업장에서 '20. 4분기(10월, 11월, 12월)를 신청한 경우, '20.10.15.부터 계속고용 된 근로자의 금액은 [$\text{해당 고시금액} \times 17\text{일}(10.15. \sim 10.31.) / 31\text{일}$]로 산정하여 적되, 원 이하는 절사

년 분기 정년퇴직자 계속고용(재고용) 명세

성명	주민등록번호	정년 퇴직일	계 속 고 용 (재고용)일	계속고용 (재고용) 종료일	장 려 금 산정기간	장려금 신청 개월수	1개월 미만에 대한 장려금
계						개월	원

< 별지 제2호서식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급 □부지급) 결정 통지서

※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1. 사업장 현황

사업장명		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장 주소		대표자	
담당자		전화번호	

2. 지급 내용

지원 유형	지급 내용		
	지급대상 기간	지급 대상자수	지급결정액
정년 연장			
정년 폐지			
계속고용(재고용)			

3. 부지급(일부지급) 사유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4 및 관련 고시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지급 □부지급 함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 ○ 지방고용노동청(○ ○ 지청)장 (직인)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안내

1. 이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에 원처분청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청구하시기 바랍니다.